

# 대학 기술 사업화지원 플랫폼(U-TECH 밸리) 구축 협약

대구대학교와 기술보증기금은 아래와 같이 대학 기술 사업화지원 플랫폼(U-TECH 밸리)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.

**제1조(목적)** 협약당사자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학이 개발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협력의 범위)** 협약참여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대구대학교는 대학 내 우수 연구 인력들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, 우수 기술창업 기업을 기술보증기금에 추천한다.
2. 기술보증기금은 각 대학이 추천한 기술창업기업에 기술금융(보증·투자 지원)과 비금융(컨설팅, IPO지원, 기술이전, 벤처·이노비즈기업 선정 등)을 적극 지원한다.
3. 협약 당사자들은 U-TECH 밸리 구축·운영과 이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적극 협력한다.

**제3조(협약이행)** 협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,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4조(비밀유지)** 협약 당사자들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호간의 공동사업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5조(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)**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서명일로부터 1년간을 협약기간으로 하되, 협약 당사자가 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 및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.

**제6조(협약의 해지)** ① 협약 당사자가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 협약 해지의 효력은 그러한 서면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② 이 협약의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협약 당사자간 서면합의에 의할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

**제7조(기타)** ①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
② 이 협약의 해석, 이행 및 기타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,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 기관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. 10. 19.

**KIBO 기술보증기금**

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

기술보증기금  
이사장 김 규 옥 (인)

 **대구대학교**  
DAEGU UNIVERSITY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대구대학교  
총장 홍덕률 (인)